

#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확인서

<b>승인번호</b>	교육부고시 제2025-167호
<b>신청 내용</b>	① 지역협업위원회명: 대구·경북 지역협업위원회
	② 전담 기관 및 참여 기관 ○ 전담기관: 대구·경북지역혁신플랫폼, 대구라이즈센터, 경북라이즈센터 ○ 참여기관: 경북대, 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
	③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: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등

<b>지정 사항</b>	○ 특화지역 지정 목적 및 기간 - (목적) 지자체-대학-지역혁신기관 및 지역기업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 - (기간) 2025.4.21. ~ 2029.4.20. (4년간) ○ 특화지역 내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내용, 기간 및 범위,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		
	<b>규제특례 내용</b>	<b>적용대상 (고등교육기관)</b>	<b>적용기간</b>
	<b>①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</b> : 「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」 제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 하되,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학점의 1/2까지 허용 < 부대조건 > · 「지방대육성법」 제23조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4년+2년 · 해당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글로컬 대학에 한하여 적용 · 「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」 제5조제1호에 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이므로 다른 조항은 그대로 준수 · 모든 과정이 아닌, <b>대학이 기업 등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</b> ·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	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	'25.4.21. ~ '29.4.20.
	<b>②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명 허용</b> : 대학 혁신을 위해 석학·산업계 인사 등 외부 인사를 대학 부총장 또는 대학원장·단과대학장으로 임명 허용하는 특례 부여	국립경국대, 경북대	
<b>③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적용</b> :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 특례 부여 < 부대조건 > · 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칙으로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검증을 포함한 심사 절차 및 규정 등을 정비하고, · 학칙으로 비전임교원의 공개채용 예외 적용요건(타 대학의 전임교원 임용 및 일정기간 이상의 산업체 경력 등)을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	국립경국대, 대구한의대, 한동대, 경북대		

2025년 4월 21일

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(인)

